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

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진선아 의원 대표발의)

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진선아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81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6년 3월 23일

발 의 자 : 강수진, 경수현, 권영애, 박영섭,
양순임, 이일준, 임현주, 정윤주,
진선아

1. 제안이유

상위법령인 「공무원 여비규정」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공무원의 출장 여비 부정 수령이 발생할 경우 환수 및 가산징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여비 집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문 내 별표 표기 및 문장부호 등 법령 정비(안 제3조제8호)

나. 여비 부정 수령 시 환수금액 및 부정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가산징수금 부과 규정 수정(안 제4조)

다. 미납 시 「지방재정법」에 따른 강제이행 절차 규정 마련(안 제4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국가공무원법」, 「지방공무원법」,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,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

나. 예산조치: 필요시 조치

다. 사전협의: 의회사무국

라. 입법예고: 2026. 3. 27.~ 2026. 4. 2.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 제목 “(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)”을 “(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준용함에 있어서”를 “준용할 때에”로, “의한다”를 “따른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8호 중 “[별표1]”을 “별표 1”로, “관한 규정”을 “관한 규정”으로 한다.

5. 영 제24조제5항 중 “「국가공무원법」 제71조제2항”은“「지방공무원법」 제63조제2항”으로 본다.

6.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징수)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여비를 부정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금액(부정 수령액을 말한다)과 가산징수금액(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)을 확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고지해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장을 신청하여 여비를 지급받는 경우
2.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경우
 - ② 임용권자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 및 가산징수 금액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고지하여 징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-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무원이 납부기한까지 환수 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「지방재정법」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채권의 보전 및 강제집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)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, 영을 <u>준용함에 있어</u> <u>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.</u>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영 제24조제5항 중 “「국가공무원법」 제71조제2항”은 “「지방공무원법」 제63조제2항”으로 <u>분다.</u></p> <p>6. 영 제27조의 규정은 <u>준용하지 아니한다.</u></p> <p>7. (생략)</p> <p>8. 영 [별표1]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“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<u>관한 규정</u>”은 “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”으로, “공무원보수규정”은 “지방공무원 보수규정”으로, “공무원임용령”은 “지방공무원 임용령”으로, “일반임기제공무원”은 “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”, “전문</p>	<p>제3조(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)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준용할 때에</u>-----</p> <p>----- <u>따른다</u>-----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영 제24조제5항 중 “「국가공무원법」 제71조제2항”은 “「지방공무원법」 제63조제2항”으로 <u>분다.</u></p> <p>6. 영 제27조는 <u>준용하지 아니한다.</u></p> <p>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-- <u>별표 1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관한 규정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
임기제공무원”은 “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”으로 한다.

제4조(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)

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.

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

2.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

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,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.

-----.

제4조(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징수)

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여비를 부정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 금액(부정 수령액을 말한다)과 가산징수금액(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)을 확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고지해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장을 신청하여 여비를 지급받는 경우

2.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경우

② 임용권자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 및 가산징수 금액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고지하여 징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무원이 납부기한까지 환수 금

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「지방재정법」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채권의 보전 및 강제집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